
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환급금 제도 특별약관 II

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환급금 제도 특별약관 II 목차

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환급금 제도 특별약관 II		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

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환급금 제도 특별약관 II

제1조 (특약의 체결 및 효력)

-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(기본계약을 말하며,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(이하 특별약관은 ‘특약’ 이라 합니다.)
- ② 이 특약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만기유지환급금을 적용합니다.
 1. 보험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1-2조 제3호의 ‘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’ 인 경우
 2. 계약체결시점에 산출한 보험계약의 ‘예상만기환급금’ 이 ‘총납입예상 적립보험료’ 와 ‘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예상 보장보험료’ 의 합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
 3.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입이 완료되고 만기시점 직전월 계약해당일까지 유지된 보험계약
- ③ 제2항의 ‘예상만기환급금’ 은 계약체결시점의 적립보험료를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 정상 납입하는 기준으로 “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” 에 따라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(단,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하며, 이하 ‘예정부리이율’ 이라 합니다.)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④ ‘총납입예상 적립보험료’ 라 함은 ‘계약체결시점의 적립보험료’ 에 적립보험료 납입 기간과 납입주기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⑤ ‘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예상 보장보험료’ 라 함은 회사에서 정한 보장별 최소가입금액(100만원) 기준 보장보험료에 보장보험료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.

【 예시안내 】

< 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예상 보장보험료 예시 >

사례1)

10년만기 전기납, 월납, 보장 가입금액 100만원, 보장보험료 500원, 보장 최소가입금액 100만원, 적립보험료 10,000원인 보험계약

- 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예상 보장보험료: 6만원(10년납 × 12월 × 500원)

사례2)

10년만기 전기납, 월납, 보장 가입금액 500만원, 보장보험료 2,500원, 보장 최소가입금액 100만원, 적립보험료 10,000원인 보험계약

- 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예상 보장보험료: 6만원(10년납 × 12월 × 2,500원) × (100만원 ÷ 500만원)

제2조 (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)

- ① 이 특약에서 ‘만기유지환급금’ 이라 함은 ‘총납입 적립보험료’ 와 ‘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 보장보험료’ 의 합계 금액에서 ‘예정부리이율로 부리한 만기환급금’ 과 ‘적립부분 적용이율(금리연동형의 경우 ‘보장성공시이율’)’ 로 부리한 만기환급금’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의 ‘총납입 적립보험료’ 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.
- ③ 제1항의 ‘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 보장보험료’ 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보장보험료의 합계를 회사에서 정한 보장별 최소가입금액(100만원)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④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이 계약의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로 “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” 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⑤ ‘만기유지환급금’ 이 0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큰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을 이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

【 예시안내 】

< 만기유지환급금 지급예시 >

금리연동형, 10년만기 전가납, 월납, 보장보험료 500원(최소가입금액 기준), 적립보험료 10,000원인 보험계약

- 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예상 보장보험료: 6만원(10년납×12월×500원)
총납입예상 적립보험료: 120만원(10년납×12월×10,000원)

- 예상 만기환급금(예정부리이율 적용) 사례별 만기유지환급금

사례1) 예상만기환급금(예정부리이율 적용) 130만원

: 실제 만기환급금과 상관없이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아님
(총납입예상 적립보험료 + 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예상 보장보험료 < 예상만기환급금
(예정부리이율 적용))

⇒ 만기유지환급금 = 0

사례2) 예상만기환급금(예정부리이율 적용) 115만원, 만기환급금(보장성공시이율) 110만원

: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
(총납입예상 적립보험료 + 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예상 보장보험료 > 예상만기환급금
(예정부리이율 적용))

⇒ 만기유지환급금 = 총납입 적립보험료 + 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 보장보험료 - Max(만기환급금(예정부리이율), 만기환급금(보장성공시이율))
= 120만원 + 6만원 - Max(115만원, 110만원) = 11만원

사례3) 예상만기환급금(예정부리이율 적용) 115만원, 만기환급금(보장성공시이율) 130만원

: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
(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+ 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예상 보장보험료 > 예상만기환급금
(예정부리이율 적용))

⇒ 만기유지환급금 = 총납입 적립보험료 + 최소가입금액기준 총납입 보장보험료 - Max(만기환급금(예정부리이율), 만기환급금(보장성공시이율))
= 120만원 + 6만원 - Max(115만원, 130만원) = - 4만원

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만기유지환급금 지급하지 않음

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'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절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제4조 (준용규정)

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.

제3조 (만기유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)

- ① '만기유지환급금' 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에 제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지급되며,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'만기유지환급금' 및 '만기유지환급금' 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만기시점 직전월 계약해당일 이후 해지한 경우에는 '만기유지환급금'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③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, 회사는 '만기유지환급금' 을 지급하기 위해 '보험료 및